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	2067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,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'16.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

나. 안정적인 열공급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

다.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○ 대　　상 : 서울에너지공사

○ 출자규모 : 20,000백만원

- 노후 열수송관 교체 : 20,000백만원

(단위 : 억원)

사업명	소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합 계	659	59	200	140	200	60
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	659	59	200	140	200	60

나. 출자 필요성

○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. 이를 위하여 '25년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

- '25년 노후 열수송관 6.1km 교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지방공기업법

〔지방재정법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〈생략〉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〔지방공기업법〕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~③ 항 생략

나. 예산조치 : '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보영(☎ 2133-3554)